

지하수영향조사기관 ☐ 등록 ☐ 변경등록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상호 또는 명칭	법인등록번호(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	
	법인의 대표자(개인인 경우 성명)		
	주된 사무소 소재지(개인인 경우 주소)		(전화번호:)
임원			
기술능력			
시설·장비			
변경등록 내용	변경 전		
	변경 후		

「지하수법」 제2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(☐등록 ☐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등록 신청	1.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(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(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을 증명하는 서류 4. 임원에 관한 사항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-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• 등록: 5만원 • 변경등록: 3만원 -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• 등록: 4만5천원 • 변경등록: 2만7천원 -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• 등록: 4만5천원 • 변경등록: 2만7천원
	변경 등록신청	1.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국가기술자격증(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